

# 교육 종사자

## Teachers and education professionals

초·중·고 교사, 학원·한국학교 강사, TAFE 및 대학 강사, 대체교사, 스포츠 코치

2025-26 회계연도 · FY2026 신고서 기준

### 공제의 3원칙 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

1. 본인이 직접 지출했고 회사에서 돌려받지 않았을 것 — 회사가 사주거나 비용을 환급(reimbursement)해 준 물건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.
2.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 — 업무용과 개인용을 함께 쓰는 물건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공제합니다.
3. 증빙을 보관하고 있을 것 — 대부분의 경우 영수증이 필요합니다. 은행 명세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### 소득 신고 시 주의

학과장 수당처럼 추가 책임에 대해 주는 수당은 신고는 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. 차량수당을 받는 경우, 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하고 실제 주행거리에 따른 금액을 따로 공제합니다. 두 금액은 보통 일치하지 않습니다.

## 공제 가능한 항목 What you can claim

### ✓ 교구와 수업 자료

스티커, 물감, 포스터, 지도, 과학·요리·재봉 수업 재료, 학생 시상품. 본인이 사고 학교에서 환급받지 않은 것.

### ✓ 문구류

업무에 사용하는 노트, 다이어리, 펜 등.

### ✓ 전문 서적과 구독

업무와 직접 연결되는 서적·학술지. 권당 \$300 이하면 즉시 공제, 초과하면 감가상각. 여러 해에 걸친 구독은 기간에 나누어 공제합니다.

### ✓ 노트북·태블릿

\$300을 넘으면 사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고, 개인적으로도 쓴다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청구합니다.

### ✓ 소풍·캠프·현장학습

교육과정과 관련된 활동에 인솔자로 참여하며 본인이 부담한 교통비, 숙박비, 식비.

### ✓ 교사 등록 갱신

현재 일을 계속하기 위한 교사 등록(teacher registration) 갱신비.

### ✓ 전문성 개발과 교육과정

현재 가르치는 일의 기술을 유지·향상시키거나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과정. 수업료, 교재, 학술지, 문구류.

### ✓ 세미나·학회 참가비

참가비와 교통비.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와 식비까지. 사적인 일정이 함께 있으면 업무 비율만큼만 청구합니다.

### ✓ 재택 채점·수업 준비

집에서 일한 실제 시간 × 시간당 70센트. 재택 근무시간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 전용 서재가 있으면 책상·의자의 감가상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#### ✓ 전화·인터넷 업무 사용분

학부모 연락, 수업 준비 등 업무 사용 비율만큼.

#### ✓ 캠퍼스 간 이동과 학생 인솔

같은 날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이동한 거리, 학생을 행사장이나 수영장으로 인솔한 거리.

#### ✓ 야외 수업 자외선 차단

체육 수업 등 장시간 야외에서 가르치는 경우 모자, 선크림, 선글라스.

#### ✓ 응급처치 과정

본인이 지정 응급처치 담당자이고 교육이 요구되는 경우.

#### ✓ 노조·교원단체 회비

전액 공제됩니다.

### 공제할 수 없는 항목 What you cannot claim

#### ✗ 집과 학교 사이 통근

대체교사로 매번 다른 학교에 가더라도, 갑자기 호출을 받아도 개인 비용입니다.

#### ✗ 학부모 상담을 위한 방문 이동

공제 대상 업무 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.

#### ✗ 최초 교사 등록비와 최초 Working With Children Check

취업 전에 자격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. 갱신은 가능합니다.

#### ✗ 본인 자녀의 교육비

학비, 자녀용 아이패드·노트북·책상·계산기·노트·펜 모두 개인 비용입니다.

#### ✗ 보육비

방학 중 돌봄, 방과 전후 돌봄 포함.

#### ✗ 평상복

정장이나 일상복, 그리고 그 세탁비. 일하다 옷이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.

#### ✗ 근무 중 식사와 교직원 회식

식대 수당을 받아도 개인 비용이며, 교직원 저녁 모임 등 사교 행사 비용도 공제되지 않습니다.

#### ✗ 직업을 바꾸기 위한 교육

예를 들어 교사가 회계학을 공부하는 경우. 스트레스 관리 과정도 제외됩니다.

#### ✗ 예방접종

학교에서 요구하더라도 개인 의료비로 봅니다.

#### ✗ 학생에게 주는 선물이나 학생 점심값

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.

#### ✗ 일반 뉴스·잡지 구독, 음악 스트리밍

업무 관련성이 부수적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.

### ABN으로 일하는 강사는 규정이 다릅니다

위 내용은 급여를 받는 직원(employee)에게 적용됩니다. ABN을 받아 개인사업자(sole trader)로 강의하는 경우에는 근로경비가 아니라 사업 경비 규정이 적용되며, \$300 합계 규정이나 \$150 세탁 규정 같은 직원용 간소화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. 또한 소득 규모에 따라 PAYG 분납(instalments) 대상이 되고, 매출이 \$75,000에 도달하면 21일 이내에 GST 등록을 해야 합니다.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.

## 금액 기준 Key thresholds — 2025-26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자동차</b><br>Car expenses                | 킬로미터당 88센트, 연간 최대 5,000km까지. 이 방법을 쓰면 연료비·정비비·보험료를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.         |
| <b>재택근무</b><br>Working from home          | 시간당 70센트 고정요율. 실제 재택 근무시간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, 추정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                |
| <b>세탁</b><br>Laundry                      | 업무복만 세탁한 경우 1회당 \$1, 개인 옷과 함께 세탁한 경우 1회당 50센트. 연간 \$150 이하면 영수증이 없어도 됩니다. |
| <b>경비 합계 \$300</b><br>Total work expenses | 업무 관련 경비 합계가 \$300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항목에 대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.                   |
| <b>물품 1개당 \$300</b><br>Single asset limit | 개당 \$300 이하는 구입한 해에 전액 공제. \$300을 넘으면 사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(decline in value)합니다. |
| <b>전화·인터넷</b><br>Phone and internet       | 업무 사용이 부수적이고 청구액이 \$50 이하면 별도 기록이 필요 없습니다. \$50을 넘으면 사용 내역이 필요합니다.        |
| <b>소액 경비</b><br>Small expenses            | 건당 \$10 이하는 연간 총 \$200까지 메모(날짜·판매처·금액·내용)로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               |
| <b>보관 기간</b><br>Record retention          |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 감가상각 자산은 마지막으로 공제한 해로부터 5년입니다.                |

### 다음 연도(FY2027)에 달라지는 점

2026년 7월 1일부터 근로 관련 경비에 대해 최대 **\$1,000**의 표준공제(standard deduction)가 도입되어, 영수증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. FY2027 신고서부터 적용되며 이번 신고와는 무관합니다. 실제 경비가 \$1,000을 넘는 분은 지금까지처럼 실비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영수증을 계속 모아 주십시오. 또한 FY2027부터는 의류·세탁·수선·드라이클리닝 공제에 **모두 증빙이 필요합니다**. 세탁 \$150 이하 면제 규정은 이번 신고가 마지막입니다.

## USQ CHARTERED ACCOUNTANTS

T. +61 3 9070 4790 · mark.kim@unitedsq.com · www.unitedsq.com

Waterman Collins Street, Level 2, 260 Collins Street · 44 Lakeview Drive, Caribbean Park, Scoresby

본 안내는 호주국세청(ATO)의 Teachers and education professionals 직업별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,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본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 주십시오.

원문: <https://www.ato.gov.au/individuals-and-families/income-deductions-offsets-and-records/guides-for-occupations-and-industries/r-z/teachers-and-education-professionals-income-and-work-related-deductions>